

부속서 6-나 자연인의 이동

적용범위

1. 이 부속서는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일시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한쪽 당사국에 의한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자연인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상용 방문자

나. 독립전문가

다. 계약 서비스 공급자

라. 기업 내 전근자

2. 이 부속서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거주나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원칙

3. 이 부속서는 양 당사국간의 특혜적인 무역관계, 상호주의에 근거하고 양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른 자연인의 입국, 일시 체류를 촉진하려는 공동의 목적, 국경의 안전을 보장하고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하면서 입국, 일시 체류에 대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4. 이 부속서에 포함된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자연인의 자국 영역에서의 입국 또는 일시 체류를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5. 자연인에게 당사국 영역으로 입국하기 전에 비자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부속서에 따른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의

6. 이 부속서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가. 허용 당사국이란 제 1 항 및 제 2 항의 적용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으로부터 입국, 일시 체류 또는 취업 신청을 접수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나. 출입국 절차란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허용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및 일시 체류 또는 상업적 주재를 설립할 권리를 허용하는 사증, 허가, 또는 그 밖의 문서나 전자적 허가를 말한다.

다. 일시 체류란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체류 또는 거주의 의도가 없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연인의 체류를 말한다.

입국 및 일시 체류의 허용

7. 각 당사국은 부록 6-나-1부터 6-나-4 까지의 그 당사국의 약속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다음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부속서에 따른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를 허용한다.

가. 규정된 출입국 절차를 위한 소정의 신청 절차를 따를 것, 그리고
나. 허용 당사국으로의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를 위한 모든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

8.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 신청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는
합리적이며 국내법에 부합하게 한다.

9. 한쪽 당사국은 제 7 항가호 및 제 7 항나호를 준수하지 않는 다른 쪽 당사국
자연인에게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0. 기업인의 입국이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당사국은 그
인의 고용을 허가하는 출입국 절차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가. 고용의 장소 또는 고용이 예정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노동분쟁의 해결,
또는

나. 그러한 분쟁에 관여된 인의 고용

11. 한쪽 당사국이 이 부속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연인이 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어떠한 면허 또는 의무적 행동 규범을 포함한 그 밖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정보의 제공

12. 제 6.9 조를 적용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 및 취업 허가를 효율적으로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정보는 계속 갱신된다.

13. 제 12 항에 언급된 정보는 특히 다음의 기술을 포함한다.
- 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연인의 입국, 일시 체류 및 취업과 관련된 모든 범주의 사증 및 취업 허가
 - 나. 요구되는 서류에 대한 정보, 충족해야 할 조건 및 제출 방법을 포함하여 최초 입국, 일시 체류 및 취업 허가의 신청과 발급을 위한 요건 및 절차, 그리고
 - 다. 일시 체류 및 취업 허가의 신청 및 발급, 갱신을 위한 요건 및 절차
14. 이 부속서의 발효 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 13 항에 언급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관련 간행물이나 웹사이트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 신속한 신청 절차
15. 한쪽 당사국이 출입국 절차를 위한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으로부터 접수한 출입국 절차 또는 그 연장을 위한 완전한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16.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17.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으로부터 출입국 절차 입국, 일시 체류 또는 취업을 위한 완전한 신청을 접수한 후 합리적 기간 내에, 협용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인에게 다음을 통보한다.
- 가. 신청의 접수, 그리고
 - 나. 신청의 상태

18.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결정이 내려진 후 신속하게 입국, 일시 체류 또는 취업 허가 신청의 결과를 그에 대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통보는 체류 기간과 그 밖의 관련 조건을 포함한다.

19. 불완전한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그 당사국은 신청을 완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추가적인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다.

20. 신청이 종료되거나 거부된 경우, 각 당사국은 적용 가능한 경우, 그러한 처분의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전자메일로 그리고 과도한 지체없이 통지한다. 신청인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신청을 다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접촉선

21. 각 당사국은 제 12 항, 제 13 항 및 제 14 항에 언급된 정보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수립한다.

22. 제 21 항에 언급된 접촉선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과장, 그리고

나. 인도네시아공화국의 경우,

통상부 국제무역협상국 서비스무역협상 과장,

또는 그 각각의 승계인

분쟁해결

23. 양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4.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어떠한 당사국도 일시 입국 허용의 거부에 대하여 제 10 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나. 영향을 받은 자연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행정 구제 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